

# NYC: 사망 후

사망진단서  
신청절차 안내서

뉴욕시 보건정신위생부

[nyc.gov/health/deathcertificates](https://nyc.gov/health/deathcertificates)

# COVID-19 자원

---

- NYC: [nyc.gov/covid19](https://nyc.gov/covid19) 또는 [nyc.gov/health/coronavirus](https://nyc.gov/health/coronavirus)를 방문하십시오.
- NYS: [covid19vaccine.health.ny.gov](https://covid19vaccine.health.ny.gov)를 방문하십시오.
- 보건자원 서비스국: [hrsa.gov](https://hrsa.gov)를 방문하여 "**COVID-19 resources**" (COVID-19 리소스)를 찾아보십시오.
-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(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): [cdc.gov/coronavirus](https://cdc.gov/coronavirus)를 방문하십시오.
- 미국 국립 보건원: [nih.gov](https://nih.gov) 를 방문하여 "**coronavirus**" (코로나바이러스)를 찾아보십시오.
- NYC의 법률서비스 액세스 라인: [legalservicesnyc.org/what-we-do/covid-resources](https://legalservicesnyc.org/what-we-do/covid-resources)를 방문하거나 917-661-4500번으로 전화하십시오.
- 미국연방재난관리청: [fema.gov](https://fema.gov)를 방문하여 "**COVID-19 funeral assistance**" (COVID-19 장례 지원)을 찾아보십시오.

## 일반 자원

---

### NYC Well

- 200개 이상의 언어로 연중무휴로 교육받은 상담사로부터 무료 비밀보장 정신건강 지원을 받으려면 888-692-9355번으로 전화하거나 65173으로 "WELL"이라는 텍스트를 보내거나 [nyc.gov/nycwell](https://nyc.gov/nycwell)에서 채팅하십시오.

사망진단서는 사람의 사망에 관한 공식 법적 문서입니다. 이 브로셔는 뉴욕 시민들이 뉴욕시 (NYC)에서 사망진단서와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.

## 사망 신고

---

뉴욕 시에서 발생한 사망은 의료 전문가가 사망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뉴욕시 보건정신위생부(보건부)에 보고해야 합니다.

### 사망진단서 등록

고인(사망한 사람)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고인의 사망 사실과 사인을 뉴욕시 보건부에 보고합니다.

장 의사 또는 의료 기관은 사망자의 개인 정보(생년월일, 통상적인 거주지 주소, 직업)와 최종 처분(예: 장례식, 화장, 매장)을 뉴욕시 보건부에 보고합니다.

NYC 보건부는 사망을 등록하고 사망진단서의 인증 사본을 보고하는 장 의사 또는 자격이 있는 당사자\*(예: 배우자, 가정 파트너, 부모, 자녀, 형제자매, 처분을 관리하는 사람)의 요청에 따라 발급합니다.

## 사망진단서 요청

---

뉴욕시 보건부는 뉴욕에서 발생한 사망에 대해 사망진단서를 발급합니다.

## 언제?

사망 진단서는 사망 신고가 접수되고 뉴욕 보건부에 등록되면 발급됩니다.

## 누가?

자격이 있는 당사자들은 언제든지 사망진단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장의사는 사망일로부터 1년까지 사망진단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## 어떻게?

COVID-19로 인해 뉴욕시 사망진단서의 대면 요청은 긴급 신청으로 제한됩니다. 긴급 상황에서는 [nycdohvr@health.nyc.gov](mailto:nycdohvr@health.nyc.gov)로 필수기록서비스 사무실(Office of Vital Records Services)에 이메일을 보내거나 **311**번으로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. 긴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망 진단서를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- 온라인: 공식 온라인 중요 기록을 위한 공인 자원이자 가장 빠른 신청 방법인 [vitalcheck.com](https://vitalcheck.com)를 방문하십시오.
- 우편으로:
  - [nyc.gov/health](https://nyc.gov/health)를 방문하여 "**death certificate application**" (사망진단서 신청서)를 찾아 다운로드한 후 작성, 서명 및 공증을 받으십시오.
  -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기입하고 표시된 대로 본인 확인 및 서명과 함께 주소를 기록하고 우표를 동봉하십시오.
  - 수수료를 계산하고 지불 금액을 동봉합니다(우편 요청의 경우 사본당 15달러, "NYC 보건정신위생부"로 지불한 우편환 또는 수표. 현금은 받지 않습니다).

지원이 필요하다면 **311** 또는 뉴욕시 교외의 경우 212-639-9675번로 전화하거나 [nycdohvr@health.nyc.gov](mailto:nycdohvr@health.nyc.gov)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.

**참고 사항:** 최종 처분이 결정되지 않았더라도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진단서 상세 내역이 보고되면 중간 또는 임시 처분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.

## 장례식장 찾아보기

### 장례식장은 어떻게 찾습니까?

- 뉴욕주(NYS) 장의사협회는 [nysfda.org/index.php/news-events/find-a-funeral-home](http://nysfda.org/index.php/news-events/find-a-funeral-home)에서 허가된 장례식장 목록을 제공합니다.
- NYS 장례의식 진행국은 [health.ny.gov/professionals/funeral\\_director/reports/openfirms\\_alpha](http://health.ny.gov/professionals/funeral_director/reports/openfirms_alpha)에서 허가된 장례담당 회사 목록을 제공합니다.

### 장례 비용을 지불할 여유가 없고 사망진단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?

- 장례식장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당사자\*가 사망진단서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**311**번으로 전화하거나 [nyc.gov/health](http://nyc.gov/health)를 방문하여 "**death certificates**" (사망진단서)를 찾아보십시오.

\*자격 있는 당사자: 배우자, 가정 파트너, 부모, 자녀, 형제자매, 조부모, 손자, 조카/손녀, 이모/삼촌, 증손자, 고조손자, 조카/손녀/손주,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정보 제공자 또는 처분권자. 위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을 권리에 대한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. 문의 사항이 있으면 **311**번으로 전화하십시오.

# 일반 자원 (계속)

## NYC 보건부

- 사망진단서를 요청 또는 수정하려면 [nyc.gov/health/deathcertificates](https://nyc.gov/health/deathcertificates)를 방문하십시오.

## 뉴욕 시 인적자원관리국

- 사회서비스부: [nyc.gov](https://nyc.gov) 를 방문하여 "burial assistance" (장례 지원)을 찾아보십시오.

## 뉴욕 시 재향군인 서비스부

- 재향군인회 청구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[nyc.gov/vetclaims](https://nyc.gov/vetclaims)를 방문하십시오.
- 재향군인의 장례나 장례 준비에 대한 정보는 [nyc.gov/vetburials](https://nyc.gov/vetburials)를 방문하십시오.

## 사회보장국

- [ssa.gov](https://ssa.gov)를 방문하여 "survivors benefits" (유족 혜택) 및 "burial funds" (장례 자금)을 찾아보십시오.

## 일반 뉴욕시 정부 정보

- **311**번 또는 212-639-9675번으로 전화하십시오.
- NYC 직원 혜택:
  - 지방 의회 37: 212-815-1000;  
[dc37.net](https://dc37.net)
  - NYC 이연보상제도: 212-306-7760;  
[nyc.gov/olr](https://nyc.gov/olr)
  - NYC 종업원퇴직제도: 347-643-3000;  
[nycers.org](https://nycers.org)